

『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길윤옥 의원 외 9인

2. 제안이유

- 공공시설의 수영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임(可妊)여성에게 대하여 생리기간중 수영장 사용료 감면 혜택
- 저출산 시대 여성의 원활한 활동지원 등 여성들의 복리증진 도모

3. 주요내용

-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%를 감액토록 규정(안 제10조제6항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, 제139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시설중 수영장 시설을 매월 이용하는 정기회원 가운데 가임 여성에 대하여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수영장 사용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사용료 일부에 대해 감액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사용료의 10%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

○ 조례안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 가임기 여성의 생활스포츠 이용 활성화와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